

2022학년도(8차 개정)

웃터골초등학교 학칙



경기도 시흥시
웃터골초등학교

웃터골초등학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웃터골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웃터골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첫째, 나라를 사랑하며 예절바른 어린이(도덕인) 둘째, 스스로 공부하며 창의력을 기르는 어린이(창조인) 셋째,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의지가 강한 어린이(건강인)를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웃터골초등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은행고길 18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 및 학년, 학기, 학급 편제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9월 5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에 운영에 따른 토요일무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제11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경기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웃터골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2.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20일이며,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37일)’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 57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3.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이때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
4.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5.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를(통보서 또는 문자)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6.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횟수는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8.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9. 본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활동 허가·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기타 체험 활동으로 한다. 단, 보호자가 신청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등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0.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11.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단계	주체	내용	비고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3일(가정학습은 1일)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교사에게 사전 요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
신청서 결재	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책임이 있는 교감 전결	
허가 여부 통보	담임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인솔자 및 학생	목적에 맞는 안전한 교외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학생 및 보호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종료후 2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출력이 어려울 경우 담임에게 사전 요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
출결처리 및 사후 관리	학교	체험학습 종료 후 학기 종료 안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하고 관련 서류 보관은 해당 학년도로 한다.	행당 학년도 보관

※ 위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교육부 법령 기준일수**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지역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 ① 평가는 참된 학력 향상을 위한 교사별 평가로 시행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

제16조(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만 6세 아동
2. 만5세 아동 중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
(단, 조기입학으로 학급이 증가할 경우는 허가할 수 없다.)

제17조(입학시기)

-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전·편입학)

- ① 본교에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제73조 및 74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입학(전학, 편입학포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의거 학구내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9조(유예 및 면제)

- ①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 ②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 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 ①항의 절차에 따라 유예를 승인 받아야 한다.

제20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제21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제22조(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3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조기진급】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진급 할 수 있다.

【조기졸업】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 할 수 있다.

【선정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③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대상자 기준】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즐거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환원조치】

- ①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4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구성】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예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부장, 조기졸업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장 기타의 비용 징수

제25조(기타비용의 징수)

수익자 부담경비(현장학습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26조(학교생활규정)

-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③ 학교 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자, 학업이 우수한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0조 (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웃터골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 ② 기타 '전교어린이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제31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웃터골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2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원지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운영세칙)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12장 보칙

제34조(학칙개정절차)

-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심의회는 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장 학업중단예방

제35조 【학업중단예방】

-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05년 9월 5일 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은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차 개정안 2011년 . 06월 .09일)
- ④ 이 학칙은 2013년 9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 2차 개정안 2013년 . 09월 .30일)
- ⑤ 이 학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3차 개정안 2016년 . 04월 .01일)
- ⑥ 이 학칙은 201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 4차 개정안 2017년 . 04월 .06일)
- ⑦ 이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5차 개정안 2018년 . 02월 .13일)
- ⑧ 이 학칙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 6차 개정안 2018년 . 04월 .11일)
- ⑨ 이 학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8차 개정안 2023년 . 1월 .1일)